

예 산 총 칙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41,981,186	10,259,436
일반회계	320,671,441	9,620,143
특별회계	21,309,745	639,292
기타특별회계	21,309,745	639,29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55,736	139,672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787,095	23,613
저소득주민생활특별회계	408,953	12,269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700,000	21,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8,320	2,950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4,382,470	131,47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3,698,800	110,964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1,210,414	36,312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5,367,957	161,03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안)"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는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30,04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비